

새도서관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제문제

— 학교도서관 관련 제법규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 규 범
<부산교육대학 교수>

目 次

- I. 序 論
- II. 學校圖書館 設置에 관한 諸問題
- III. 學校圖書館 施設·資料에 관한 諸問題
- IV. 學校圖書館 司書教師에 관한 諸問題
- 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 學校圖書館 發展이 最近에 와서 너무나 沈滯되었고, 情熱的인 司書教師도 虛脫感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時點에서 多幸히도 24年만에 學校圖書館 母法인 圖書館法이 全文改正 되었고, 그 施行令도 따라 改正되었다. 정말 기쁜 일이며, 圖書館 發展을 위한 새로운 活力素가 된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學校圖書館 運動이 시작된지 40餘年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教育行政家 그리고 教育專門職과 管理職은 물론 教育 一線에서 直接 學生들을 指導하는 教師 마저도 學校圖書館의 教育的價値를 切實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學校圖書館의 根本教育哲學을 理解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이러한 教育哲學 貧困의 狀況에서는 學校圖書館의

法規制定 및 行政이 올바른 姿勢와 方向을 잡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學校圖書館이 期待하는 速度로 發達하지 못하고 있는 原因은 무엇일까? 그 原因의 大部分은 教育哲學의 貧困에서 오는 學校圖書館 法規의 未備와 教育行政의 잘못에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考에서는 새로 改正된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은 물론 學校圖書館의 設置와 資料, 司書教師 및 學校圖書館의 發展策에 관계되는 諸般 法規를 提示하고, 이들 法規에 내포된 諸問題點을 밝히고자 한다.

II. 學校圖書館 設置에 관한 諸問題點

A. 關係法規

1. 圖書館法

圖書館法¹⁾에 學校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第5章 學校圖書館：第35條(設置)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準하는 各級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

學校施設·設備基準令²⁾ 중에서 關係條項을 추려

1) 圖書館法：法律 第3972號 全文改正 1987. 11. 28公布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大統領令 第12524號, 12차개정, 1988. 9. 24. 公布

보면 다음과 같다.

第5條(校舍 및 園舍) ①學校의 校舍(유치원의 원사를 除外한다)는 學習과 保健衛生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5(省略)
6. 圖書室
7. ~9.(省略)

2. 問題點

1) 圖書館法 第5章 第35條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서 볼 때, 學校圖書館(室)의 設置는 單純한 勸獎規定이 아니고 義務規定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學校는 마땅히 圖書館(室)을 設置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國家의 意思를 背反하는 違法行爲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設置現況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館(室)을 設置하고 있는 學校가 全體學校數의 約折半이 넘는 (6055校=57.4%)실정이다.

<表1> 學校數와 圖書館(室)數의 對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合計
學 校 數	6,463	2,429	1,653	10,545
圖書館(室)數	3,309	1,409	1,343	6,055
圖書館設置校의 比率(%)	51.2	57.76	81.25	57.42

資料：韓國圖書館協會編,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同協會, 1988.

<表2> 專用圖書館數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合計	學校總數에 대한 比率(%)
56	30	165	251	10,545(학교총수) 2.38

資料：文教部, 圖書館發展委員會 會議資料(油印物), 1989.9.7

더욱이 <表2>에 의하면 圖書館(室)을 다른 用途에 兼用하고 있는 學校가 大多數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圖書館 本來의 目的에만 使用하고 있는 實質的인 圖書館(專用圖書館)은 251個館에 不過하며, 이는 初·中·高等學校 總數의 2.38%에 該當하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은 學校 教育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教育資料를 提供하는 奉仕機能 외에 圖書 및 圖書館 利用指導를 通하여 學習方法을 배우는 것을 비롯한 教育機能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얼마의 資料를 갖추어서 그것을 손쉽게 提供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의 組織과 各種 資料를 能熟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訓練하는 教室 또는 實習場으로서 學校規模에 合當한 크기의 獨立된 圖書館이 設置되어야 한다.

“學校의 基礎的 設備로서 學校圖書館은 奉仕機關과 教育機關의 두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前者는 教育活動을 支援하는 資料의 供給源으로서 活動하는 것이며, 後者는 그 自體가 直接 教育의 場으로서 일하는 것이다”³⁾

따라서 圖書館(室)이 다른 用途에 兼用되거나 資料를 保管하는 방으로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며 모든 學校는 專用圖書館(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學校의 크기에 따른 圖書館(室)의 크기가 規定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基準이 어느 곳에도 規定한 곳이 없다. 이것은 가령 30學級이 넘는 큰 學校에서 10學級 밖에 되지 않는 작은 學校에 적합한 크기의 圖書館(室)을 가지고 있어도 許容된다는 뜻인가? 學校의 規模에 따라 適合한 크기의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圖書館의 教育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III. 學校圖書館 施設·資料에 관한 諸問題點

A. 關係法規

1.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

圖書館法 第6條(圖書館의 施設·資料)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 및 資

3) 日本 圖書館教育研究會 編, 學校圖書館資料의 選擇, 東京學藝圖書, 1955. P.9

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圖書館 種類別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同法 施行令 第3條(圖書館 施設 및 資料基準), 法 第6條2項의 規定에 의한 圖書館 種類別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別表 1과 같다.

이 規定의 <別表1>에 보면 “學校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基準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의 規定에 의하되 教授·學習資料 센터의 機能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視聽覺·컴퓨터 教育資料 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5條 ⑥도서관의 閱覽座 席數 및 備置圖書數의 基準은 <別表 3>과 같이 한다.

<別表3> 도서관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분	열람좌석수	도 서 수
국민학교	보통교실 겸용	1학년당 단행본 100권이상
중 학교	1학년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년당 단행본 120권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한다.
고등학교	1학년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년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한다.

同基準令 第7條(教具)① 各級學校에는 學科 또는 敎科別로 必要한 圖書, 기계·기구·標本·模型 등의 教具를 두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教具의 種目과 그 基準은 文敎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한다.

B. 問題點

1. 學校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에 관한 基準에 대하여 圖書館法은 그 施行令에 그리고 同施行令은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定하도록 차례로 미루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圖書館法 施行令

水準에서 施設과 資料에 관한 概念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여야만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서 實效있는 基準을 마련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2. 圖書館에 관한 法規를 制定하거나 圖書館을 計劃, 運營, 評價할 때는 圖書館의 三要素가 반드시 考慮되어야 한다.

「圖書館資料」가 있으면 그것을 整理하고 運用할 「圖書館職員」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保管하고 利用할 「圖書館施設」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圖書館資料, 圖書館職員, 圖書館施設을 우리는 圖書館의 三要素라고 부른다. 어찌하여 圖書館과 그 施行令은 물론 學校施設·設備基準令까지 施設과 資料들 같은 條文에서 묶어서 規定하였는지? 적어도 圖書館法 施行令에서 區分하여 概念規定을 하고 이를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具體的으로 規定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3. 學校圖書館 施設은 最小限 閱覽室과 整理室(學生數에 比例한 基本面積을 갖춘 室)을 가져야 하고, 그곳에는 各種 設備(備品과 用具)가 갖추어져야 圖書館資料를 제대로 運用하고, 教育活動을 할 수가 있다.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서 圖書館 施設基準을 閱覽座席數만을 限定시켜 規定한 잘못도 있지만 국민학교 圖書室을 보통교실 兼用으로 使用하도록 단정하여 規定한 것은 前述한 學校圖書館 設置의 本質에 어긋나는 問題이다.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은 閱覽室과 整理室 等 空間 施設의 面積과 必要한 備品 및 用具 等 內部施設을 함께 規定하여야 한다고 본다.

4. 學校施設·設備基準令<別表3>에 備置圖書館數의 基準을 보면, 學級當 圖書數만을 規定하고 있다. 마치 무슨 책이라도 있으면 圖書室이 될 수 있다는 印象이다. 小說책이나 雜誌 나무방이를 모아서 基準數量을 채워 두었다고 하여도 本令으로는 조금도 나무랄 수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이 本令은 集書構成의 問題를 完全히 無視하고 있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의 資料는 먼저 學校教育의 一般目的에 符合되는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學生들의 學習活動에 有益하고, 그들의 敎養을 높이는데

<表3> 學生數와 藏書數의 對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合 計
學 生 數	4,819,857	2,523,515	2,300,582	9,643,954
藏 書 數	10,136,203	4,816,627	7,220,918	22,173,748
1人當藏書數	2.1	1.9	3.1	2.3

資料：韓國圖書館協會 編，韓國圖書館統計，서울，同協會，1988

有益하고, 그들의 健全 한 趣味와 娛樂(Recreation)에 有益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各級 學校圖書館의 集書構成에 있어서는 初等學校, 中等學校의 경우, 男學校와 女學校의 境遇 그리고 人文系 高等學校와 實業系高等學校의 境遇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의 特殊性이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原則을 實現시키기 爲하여 法規는 主題別 標準集書構成의 比率의 基準을 定해야 한다.

多幸히도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7條(教具)① 各級學校에서는 學科 또는 教科別로 必要한 圖書(省略)를 두도록 規定하고, ② 項에 ……(省略) 그 基準은 文敎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規定을 잘 적용하면 各級學校 教育目的에 따라 必要한 主題別 藏書構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

5. 圖書館法 施行令 第3條<別表1> 3에 의하면 “學校圖書館은 教授·學習資料센터의 機能과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視聽覺·컴퓨터 教育資料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規定하여 圖書以外의 資料, 즉 非圖書資料를 갖추도록 要求한것은 現代學校圖書館資料의 性格을 잘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同法 施行令은 더욱 具體的으로 學校圖書館에 必要한 非圖書資料의 種類를 明示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6. 學校施設·設備基準令<別表3>에 規定한 備置圖書數의 基準은 1學級當 圖書數를 定하고 있으나 學生 1人當 圖書數로 환산(1學級當 50名 基準)하면 平均 2.5권 꼴이다. 물론 最低 基準을 規定하였겠지만 美國과 日本이 學生 1人當 10권이상으로 必要로 하는데 比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 基準이다.<表3>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學級學校 學生數와

藏書數를 對比해 보면 1人當 平均 2·3권인 것이다. 이들 統計를 보아도 1988年度에 制定公布한 同基準令이 너무 낮게 策定되었다는 것을 證明하며, 學校圖書館行政의 消極性을 여기에서도 엿볼수 있다.

參考로 各級學校 學生 1人當 資料 購入費를 보면 <表4>와 같다. 資料 購入費의 이러한 現況은 學生들이 學習活動에서 일어나는 많은 關心과 慾求를 制限시킨 罪過를 범한 結果가 된 것이다.

<表4> 學生1人當 資料購入費(1989年度)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合計(平均)
資料購入費(원)	353	307	688	1348(449)

資料：文敎部, 圖書館發展委員會 會議資料(油印物), 1989. 9. 7

IV. 學校圖書館 司書教師에 관한 諸問題點

A. 關係法規

1.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

圖書館法 第7條(司書職員 등)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必要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省略>

司法 施行令 第4條(司書職員 등의 配置基準)：① 法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의 配置基準은 <別表2>와 같다.

<別表2>

구 분	배 치 기 준
학교도서관	1. 국민학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 교사·점입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

구분	배치기준
	<p>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각 1인을 둔다.</p> <p>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각 1인을 두며, 24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1인을 둔다.</p>

同法 施行令 附則 第4條(圖書館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配置等에 관한 經過措置)이 令 施行 當時 別表1에 의한 圖書館 種類別施設 및 資料 基準과 別表2에 의한 司書職員 司書教師 및 실기교사(司書)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令 施行日로부터 10年 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教育法 第4章 第79條(敎員의 種別과 資格) ① 교사는 正敎師(1級, 2級)準敎師 特殊學校敎師 敎導敎師 司書敎師 實技敎師 養護敎師로 나누되, 別表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자라야 한다.

〈別表1〉 敎師資格基準

學校別 資格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사서교사	<p>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p> <p>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p> <p>3.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司書敎育課程을 專攻하고 博士學位를 받는 者</p>		

B. 問題點

1. 圖書館法 施行令上의 學校圖書館 職員配置基準의 경우, 司書敎師 兼任司書敎師(敎科授業을 맡고 있는 司書敎師) 實技敎師(司書)中 어느 職員을 두어도 상관 없도록 융통성 있게 規定하고 있으나 이것은 깊이 생각할 問題라고 본다. 얼핏생각하면 圖書館 業務를 專擔하는 司書敎師를 配置하는 것이 理想的일 것 같지만 敎科授業을 一部 맡은 司書敎師 配置가 더 現實性이 있다고 본다. 물론 司書敎師의 週當 授業時數를 輕減시켜주는 行政的 措置는 따라야 한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學級擔任制이기 때문에 專擔司書敎師 또는 實技敎師(司書)를 配置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圖書館法 施行令의 司書敎師 配置基準은 學校圖書館의 管理業務를 擔當할 最小限의 人員 基準이

〈表5〉 有資格司書敎師 分布狀況

	學校數(A)	圖書館數(B)	有資格司書敎師數(C)	$\frac{C}{A} \times 100$	$\frac{C}{B} \times 100$
國民學校	6,463	3,309	262	4.05	7.92
中學校	2,429	1,403	213	8.77	15.19
高等學校	1,653	1,343	353	21.36	26.29
合計	10,545	6,055	828	7.85	13.68

資料: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圖書館統計, 서울, 同協會, 1988.

될지언정 學校圖書館 自體의 教育活動(圖書 및 圖書館 利用指導를 비롯한 圖書館에 의한 教育)은 점점 엄두도 못하는 人員 配定이 아닐 수 없다.

3. 새로 改定된 法條文대로 一時에 司書教師를 配定한다는 것은 教育財政上 도저히 不可能하겠지만 年次的으로 司書教師 T/O를 配定하는 일이 時急한 問題이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資格司書教師(180~200時間 圖書館學講習을 이수한 教師)의 數는 初中高를 합하여 828名에 불과하며, 總學生數의 7.85%, 그리고 圖書館數의 13.68%에 해당하는 有資格司書教師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형편이 좀 나은 高等學校의 경우를 보더라도 學校數의 21.36%, 그리고 圖書館數의 26.29%에 해당하는 353名の 有資格司書教師가 配置되어 있는 한심한 實情에 있다. 圖書館資料를 不問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圖書館數는 有資格司書教師가 配置되어 있는 828個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教育法: 第79條 別表1 가운데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에 관한 規定은 司書教師의 法的地位에 큰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司書教師는 一般教師의 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가져야 하므로, 一般教師보다 高等의 資格基準을 要求하고 있으면서 司書教師로 任命되면 一般教師보다 格下된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여 進級の 機會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改正된 새 司書教師 資格基準을 다시 改正하여 一級司書教師와 二級司書教師로 區分하고, 一般教師에 準하여 그 資格을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된 司書教師 資格基準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는데도 이렇게 예사로 미루고 있는 것은 司書教師의 重要한 役割을 認識하지 못한다

一般 教科教師의 役割을 한 教科를 여는 하나의 員외라고 비유한다면 司書教師는 學校教育의 全領域을 여는 메스터 키(master key)라고 불릴만큼 重要役割을 하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重要職에 비추어 各級學校에 司書教師中에 主任司書教師를 任用해야 한다고 본다. “主任教師

任用”에 보면 各級學校에 여러 主任教師(敎務, 研究, 學生, 새마을, 學生, 科學, 分校, 體育, 實科, 倫理, 및 敎導主任教師)를 任用하여 重要 教育活動을 할 수 있도록 配慮하고 있으면서 왜 主任司書教師 任用 意思는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5. 圖書館法 施行令 附則 第4條의 圖書館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配置에 관한 經過措置에 보면 “圖書館 種類別 施設 및 資料基準과……司書教師 및 實技教師(司書)의 配置基準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令 施行日로부터 10年 以內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이러한 經過措置는 館種別 全體圖書館을 對象으로 할 때, 財政上 理解가 되지만 教育方法 改善을 위한 學校圖書館 育成策으로는 너무나 消極的인 姿勢가 아닐 수 없다.

V. 結 論

學校圖書館의 母法인 새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은 물론 學校圖書館과 관련된 文教諸法規를 살펴보고, 學校圖書館 發展策을 위해 이를 諸法規上 어떠한 問題點이 있는가를 考察하였다.

이들 問題點 중에는 改正되어야만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두어도 運營만 잘하면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다. 要는 이 관계 法規를 運營하는 文教當局이 얼마나 學校圖書館에 대한 教育哲學과 그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얼마나 誠意 있게 學校圖書館을 育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成敗가 決定된다고 할 것이다.

國家·社會의 發展은 教育의 質에 달려있다고 한다. 教育의 質을 높이는 教育方法 改善을 위하여 이제 學校圖書館에 投資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輕視하였거나 忘却하였던 學校圖書館 關係 諸法規를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 보아야 할 處地에 있다고 할 것이다.

本欄에서는 前述한 學校圖書館 관련 諸法規上의 問題點을 다시 要約하는 것보다 學校圖書館 育成策을 위한 몇가지 改善點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끝맺으려고 한다.

첫째,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施設과 資料의 基

準을 別途 項目에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지금보다 上向調整되어야 한다.

둘째, 司書教師의 T/O確保는 물론 司書教師의 昇進制度 및 主任司書教師의 任用規定 等 司書教師를 위한 法的 또는 行政的 誘因體制를 強化하여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教授 學習 活動의 支援은 물론 圖書館教育(資料 및 圖書館指導)의 教育課程開發과 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學校圖書館 行政體制가 時急한 問題이다. 卽 學校圖書館 行政支援을 위해 文教部 內에 學校圖書館 擔當獎學官을 두고, 特別市 및 道教育委員會와 市·郡教育廳에 學校圖書館 獎學士를 配定하여 學校圖書館의 獎學指導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學校圖書館은 學校教育 次元에서 行政體制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지, 社會教育次元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現 行政體制는 改善되어야 한다.

네째, 發展的으로 이웃 日本과 같이 學校圖書館法(單獨法)을 制定(1953年 制定公布)하여 學校圖書館 特殊性을 考慮한 學校圖書館育成策을 積極的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學校圖書館의 諸法規 및 行政制度의 未備 等으로 이 以上 專用學校圖書館 數가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하고, 司書教師의 士氣 低下와 意慾喪失로 圖書館 忌避現象이 發生하지 않도록 精神 차릴 때가 왔다고 본다.

相反되는 論理같지만 우리나라 學校圖書館 運動은 法規와 行政的 뒷받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教育 一線에서 일하는 몇 몇 司書教師들의 남다른 教育信念과 熱誠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自己犠牲을 무릅쓰고 先驅者의 役割을 해온 것처럼 오늘의 司書教師들은 先輩가 걸어온 傳統을 이어받기를 希望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 137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5616

서 명	저 자	발행연도	면 수	가격
한국십진분류법 (본표·상관색인)	분류분과위원회편	1980	1,030	20,000원
한국목록규칙 (3.1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101	4,000원(양장) 6,500원(반양장)
한국도서관통계 (1989 년 도 판)	한국도서관협회	1989	64	4,000원
도서관학·정보학 용 어 사 전	사공 철 등 편	1986	336	25,000원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
한국도서관기준	기준분과위원회편	1981	109	3,500원